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6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 안 제10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안 제12조의4)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183, FAX : 032-749-7159
- E- mail : lgh5501@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 를 “(구청장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을 “외국인” 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를 삭제하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을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 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로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3(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에”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li style="color: red;">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li style="color: red;">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설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수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3(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

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6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일간신문 중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 공고(제2022-1336호, 2022. 9. 5.) 결과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금고의 수 : 1개의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 체결 진행

3.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거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5.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서류열람

- 기 간 : 2022. 10. 13.(목)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장 소 : 연수구청 1층 세무2과 (☎ 032-749-7532)
- 열람서류 : 2019~2021 세입·세출결산서, 2022 세입·세출예산서 등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10. 14.(금)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연수구청 1층 세무2과
- 제출부수 : 제안서 12부 (원본1, 사본1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금고지정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2부

* 연수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제2022-1336호, 2022. 9. 5.)에 따라 기 신청한 금융기관은 재공고에 따른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2] 참조
- 평가세부항목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총자본비율」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BIS 자기자본비율과 일치해야 함.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의평가
- 구금고 지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인 서류 심사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불응 시에는 평가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포기 또는 금고약정의 지연 등 새로이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OCR센터 구축, OCR수납 처리비용, ETAX 등), 인수인계 비용 등은 구금고 부담으로 함.

11. 기 타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은행별 제안서 12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연수구 세무2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연수구 세무2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 추가제출 서류(제출자료 검증 등 확인자료) 1부는 밀봉 제외
- 제안서 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금융기관의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세무2과로 문의(☎032-749-753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 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과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 “연수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변경
- 나. 연수구 공공도서관 운영방침 반영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주요내용

- 가. 제17조제2호 내용 변경
 -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변경

나. [별표 1] 내용 변경(제5조제3항 관련)

- “연수어린이도서관” 을 “연수꿈담도서관” 으로 명칭변경
- 함박비류도서관의 위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다. [별표 2] 내용 변경(제14조제1항 관련)

- “연수어린이도서관” 을 “연수꿈담도서관” 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운영 시간 변경

라. [별표 3] 내용 변경(제19조제1항 관련)

- “연수어린이도서관” 을 “연수꿈담도서관” 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내용 추가
- 도서관 시설물의 수수료(복사기 및 프린터) 내용 추가
- 도서관 시설물 배열순서 변경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제1호, 안 제19조제5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9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 연 락 처: 전화 749-8253, FAX 749-8279
- E-mail: angie622@korea.kr
- 연수구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자료

-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창달” 을 “발전”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 를 “전임위원”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단” 을 “다만”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연수어린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를 “연수꿈담 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타인” 을 “다른 사람”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분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분관	해돋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3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17

[별표 2]

도서관 운영 시간(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학습 열람실	07:00 ~ 22:00
		공 연 장	10:00 ~ 22:00
		세 미 나 실	10:00 ~ 18:00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유 아 자 료 실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일 반 자 료 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 연 장	09:00 ~ 22:00
		동 아 리 실	10:00 ~ 22:00
분관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자 료 실	10:00 ~ 18:00 (목요일 20:00까지)
		공 연 장	10:00 ~ 22:00
		독서 토론실	10:00 ~ 18:00
분관	해돋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 연 장	10:00 ~ 22:00
		디지털북카페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학습 열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자 료 실	09:00 ~ 18:00
		커뮤니티룸	09:00 ~ 18:0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자 료 실	09:00 ~ 18:00
		프로그래밍실	09:00 ~ 18:00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 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료 포함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야간	25,000원	
	연수꿈담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야간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야간	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연수꿈담도서관 동아리실	주.야간	무 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함박비류도서관 프로그램실	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구분	규격	금액	비고
복사기 및 프린터	B5이하	30원	◦ 1면당 기준
	A4	40원	
	B4이상	5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u>창달</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에 한 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u>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u>당해</u>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발전</u>----- -----, ----- ----- ----- -----.</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 <u>조례에서</u> ----- -----.</p> <p>제9조(임기 등) ① ----- -----, <u>한 차례만</u> -----, ----- ----- <u>전임위원</u> ----- ----- 하며, ----- -- <u>해당</u> ----- -----.</p>

② (생략)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생략)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 3. (생략)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연수어린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3. ~ 6. (생략)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다만, -----
----- 그 밖의 -----

2.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연수꿈담도서관 : -----
-----, 동아리실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라 -----
-----.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②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③ ----- 필요
한 -----

-----.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른 사람
-----.

주식 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의회의원		박현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박현주	대한항공	39	매각	1,004	2022.8.24.	미래에셋증권	